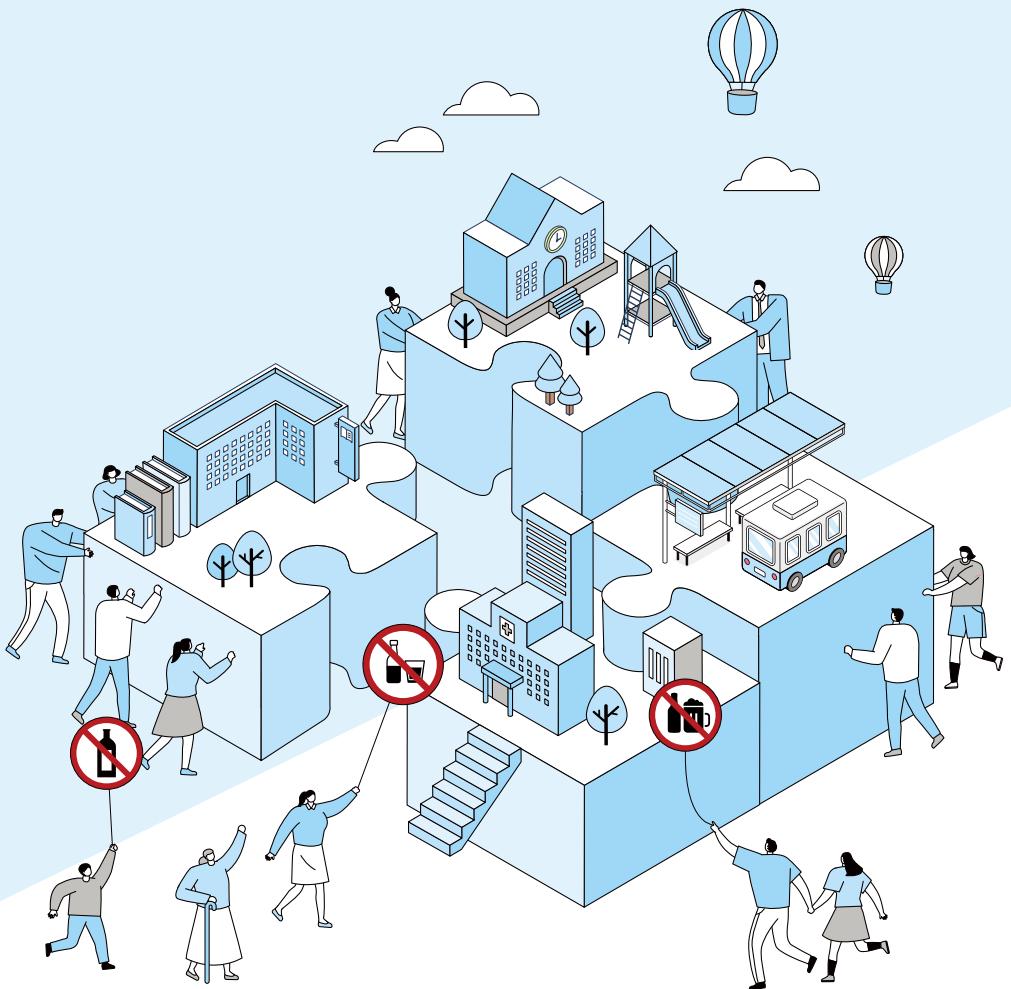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420-11

관 리 번 호
정책-03-2025-026-11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2024년(개정 전)	2026년(개정 후)	페이지
part 1.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정책			
1. 추진배경 및 목적	그림1. 건강위험요인별 사회경제적 비용 추이	2024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연구 결과 업데이트(2017~2021)	10p
	주요 국가의 공공장소 음주규제 현황	주요 국가의 공공장소 음주규제 현황 업데이트	11p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경험 조사 결과	2024년 음주폐해예방사업 통합조사 운영 결과 업데이트(공공장소 금주구역 인지도)	12~14p
4. 금주구역 지정·운영 추진방향	금주구역 지정·운영 추진 방향	'26년 사업 내용 반영하여 업데이트	15p
part 2.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1. 금주구역 지정	<p>3) 금주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생략) ▶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p>3) 금주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과 그 소속시관의 청사(법원조직법 제3조) (생략) ▶ 공공기관의 청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생략)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생략) ▶ 청소년수련관, 청소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3조) (생략)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p>* 제시된 금주구역은 권장사항으로, 자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p>	18~19p
2. 금주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p>3)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 설치 방법 및 내용</p> <p>(2) 안내표지 설치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주온(ON) 홈페이지(https://www.khealth.or.kr/alcoholstop) → 자료 → 발간물 → '금주구역 표지 활용 가이드라인' 다운 	<p>3)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 설치 방법 및 내용</p> <p>(2) 안내표지 설치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주온(ON) 홈페이지(https://www.khealth.or.kr/alcoholstop) → 자료 → 발간물 → '금주구역 표지 활용 가이드라인' 다운 	20p

구분	2024년(개정 전)	2026년(개정 후)	페이지
part 3.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4. 금주구역 지도·점검	1) 금주구역 지도·점검 기본 방향 ※ 절주전문인력이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절주전문인력(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로,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교육 및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강사)*으로 자격을 갖춘 자 * 절주전문인력(강사)를 활용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절주온 홈페이지 '대국민 교육' 신청할 수 있음	1) 금주구역 지도·점검 기본 방향 ※ 절주전문인력이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절주전문인력(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로,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교육 및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강사)*으로 자격을 갖춘 자 * 절주전문인력(강사)을 활용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사업단으로 문의	26p
	2) 금주구역 지도·점검 운영 (2) 단속 원칙	2) 금주구역 지도·점검 운영 (2) 단속 원칙(신규) [그림9] 금주구역 내 음주 단속 절차(안)	27p
	3) 금주구역 음주행위 적발자 조치 [그림 9] 민원 조치 절차	3) 금주구역 음주행위 적발자 조치 (표 삭제)  ※ 전화민원접수 시 방문, 주의 및 시정조치	28p
part 4. 교육 및 홍보			
2. 홍보	※ 절주서포터즈 협력홍보, 금주구역 홍보콘텐츠 활용(절주온(https://www.khealth.or.kr/alcoholstop))	※ 절주서포터즈 협력홍보, 금주구역 홍보콘텐츠 활용(절주온(https://www.khealth.or.kr/alcoholstop) > 자료 > 영상, 발간물 등 <참고> 공공장소 금주구역 공익광고(신규) <참고> 공공장소 금주구역 홍보물(신규)	37p
part 5. 행정사항			
2. 금주구역 지정 실적 보고	③ 보고시기 : 매년 3월	매년 2월 말 <참고>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조례 제·개정 현황(신규)	41p

구분	2024년(개정 전)	2026년(개정 후)	페이지
part7 . 지역사회 금주구역 지정 및 사업 우수사례			
2. 홍보	2023년도 우수사례	2024~2025년도 우수사례 업데이트	48~56p
part 8. 기타			
1. 금주단속 요원 업무 매뉴얼(안)	<p>2) 안전관리</p> <p>▶ 안전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주단속요원은 지도단속 시 반드시 2인 1조로 구성하고 항상 동행해야 함 - 위반자가 과격한 언행이나 시비 등으로 대화가 곤란하면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함 - 위반자가 과격한 언행이나 시비 등으로 대화가 곤란하면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함 ※ 진정요청 예시문 : “선생님, 화가나셨겠지만 차분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폭력에 대하여 (생략) ※ 폭력 발생 시 동료 단속요원이 신속하게 민원인 제지 또는 경고 멘트 ⇒ “선생님 그런 행동은 형법 제260조에 의한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p>▶ 행위유형별 적용법률(신규)</p>	<p>2) 안전관리</p> <p>▶ 안전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주단속요원은 지도단속 시 반드시 2인 1조로 구성하고 항상 동행해야 하며, 음주측정기기의 사용방법, 단속시 주의사항 및 언행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교양한 후 단속활동에 임함 - 위반자가 과격한 언행이나 시비 등으로 대화가 곤란하면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함 - 폭력에 대하여 (생략) ※ 폭력 발생 시 동료 단속요원이 신속하게 민원인 제지 또는 경고 멘트 ⇒ “선생님 그런 행동은 형법 제260조에 의한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61~63p
3. FAQ	<p>Q1~7</p> <p>* 절주온(ON) 홈페이지(https://www.khealth.or.kr/alcoholstop)</p>	<p>FAQ 업데이트</p> <p>* 절주온(ON) 홈페이지(https://www.khealth.or.kr/alcoholstop) → 자료 → 발간물, 영상 등</p>	66~67p

CONTENTS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PART 1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정책

① 추진배경 및 목적	10
② 법적 근거	14
③ 주요 내용	15
④ 금주구역 지정·운영 추진방향	15

PART 2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① 금주구역 지정	18
② 금주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20

PART 3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①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수행체계	24
② 금주구역 기본 관리 업무	24
③ 금주구역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25
④ 금주구역 지도·점검	26
⑤ 금주구역 안내표지 등 점검	30

PART 4

교육 및 홍보

-
- | | |
|-----------|----|
| ① 교육 및 연계 | 36 |
| ② 홍보 | 37 |

PART 5

행정사항

-
- | | |
|-----------------|----|
| ① 인력운영 방향 | 40 |
| ② 금주구역 지정 실적 보고 | 41 |

PART 6

지자체 표준 조례안

44

PART 7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 우수사례

48

PART 8

기타

-
- | | |
|--------------------|----|
| ① 금주단속요원 업무 매뉴얼(안) | 60 |
| ② 양식(예시) | 63 |
| ③ FAQ | 66 |

1

추진배경 및 목적

2

법적 근거

3

주요 내용

4

금주구역 지정·운영 추진방향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1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정책



PART 1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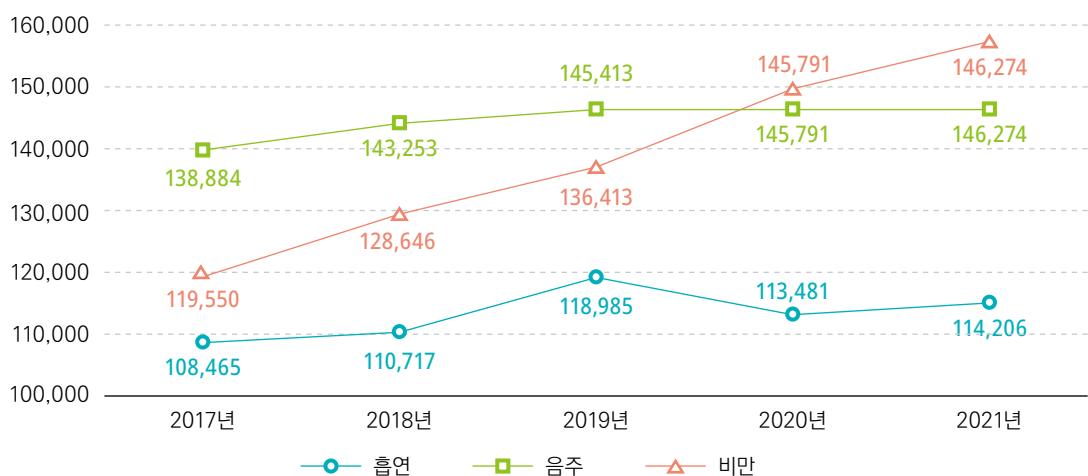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시간·장소 등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임

- 그러나 알코올은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 중 유해성이 1위인 물질이며, 음주는 음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그림 1] 건강위험요인별 사회경제적 비용 추이¹⁾



- WHO에서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많은 국가들이 판매시간이나 판매장소 규제를 통해 주류 구매에 대한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190개국 중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학교(109개국), 정부기관(87개국), 의료기관(89개국)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전반적 음주량 감소, 청소년의 과다음주 및 폭력사건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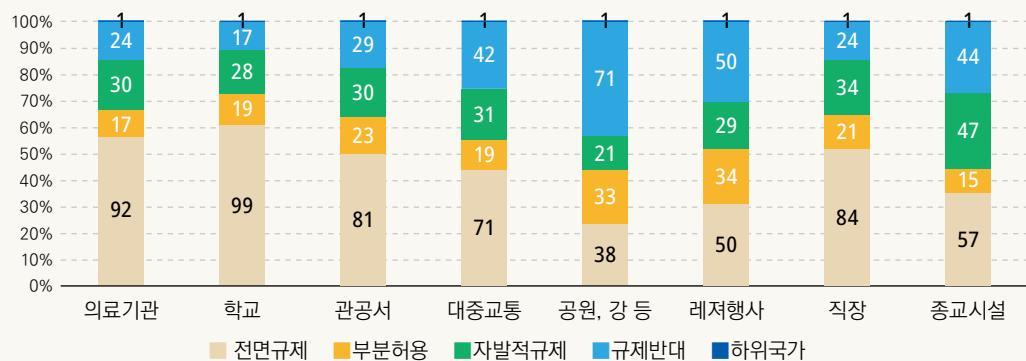
1)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2017~2021년을 대상으로(2024).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공공장소 음주규제의 동향

■ WHO 공공장소 음주규제 정책

- WHO는 공공장소에서 음주규제를 의료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대중교통, 공원 등 길거리, 스포츠 행사장소, 콘서트 등 여가 및 문화 행사, 일터 등으로 세분하여 평가하고 있음(WHO, 2018)
- 세계 190개국 중 절반 이상(87~109개국)의 국가에서는 학교, 정부기관, 의료기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함.
 - 163개국 중 음주규제를 많이 하는 공공장소는 학교 (118개국), 직장(105개국), 관공서(104개국), 스포츠시설 및 행사(84개국), 종교시설(72개국), 공원(71개국), 레저행사(55개국) 순임

[그림 2] 공공장소 유형별 음주규제 국가 수 비율(%)



자료원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8. World Health Organization

■ 주요 국가의 공공장소 음주규제 현황

국가 명	음주금지/제한 공공장소	금지행위	벌칙	비고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상업지역, 쇼핑구역 공공 교통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해변, 공원, 도로, 보도, 골목길 정부시설(공원 등)과 해당시설 입구 교회, 극장, 도서관, 운동시설, 병원 공공행사시 일시적 특정 장소 등 	음주, 오픈된 술병 소지, 음주 후 소란, 위협적 행동 (모두 또는 한 가지 이상)	보호조치 (일시적), 술병압수, 벌금, 퇴거, 징역형 등	6개주 모두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소유지가 아닌 대부분을 공공장소로 지정 	음주, 오픈된 술병 소지, 음주 후 소란, 위협적 행동 (모두 또는 한 가지 이상)	보호조치, 술병압수, 벌금, 퇴거, 징역형 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 관리 면허가 없는 장소, 상점 등 일반도로, 고속도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부지 공원, 놀이터, 오락 장소 복도, 로비와 같은 아파트 공동구역 차량 내, 터미널/정류장, 플랫폼이나 대합실 	오픈된 주류 소지, 음주, 음주 후 타인에게 위해한 행동을 하거나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	경범죄, 벌금이나 구금 가능	
영국	공공장소에 대중교통 수단 포함	음주, 오픈된 술병 소지, 음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주류 압수, 벌금, 구속, 징역형 등	
싱가포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장소(공원, 해변, 항구 등)	오후 10:30부터 오전 7시까지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	벌금, 징역형 등	

● 최근에는 우리나라로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본인과 타인의 안전문제, 소란이나 쓰레기 투척 문제 등 폐해로 인해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경험 조사 결과²⁾

■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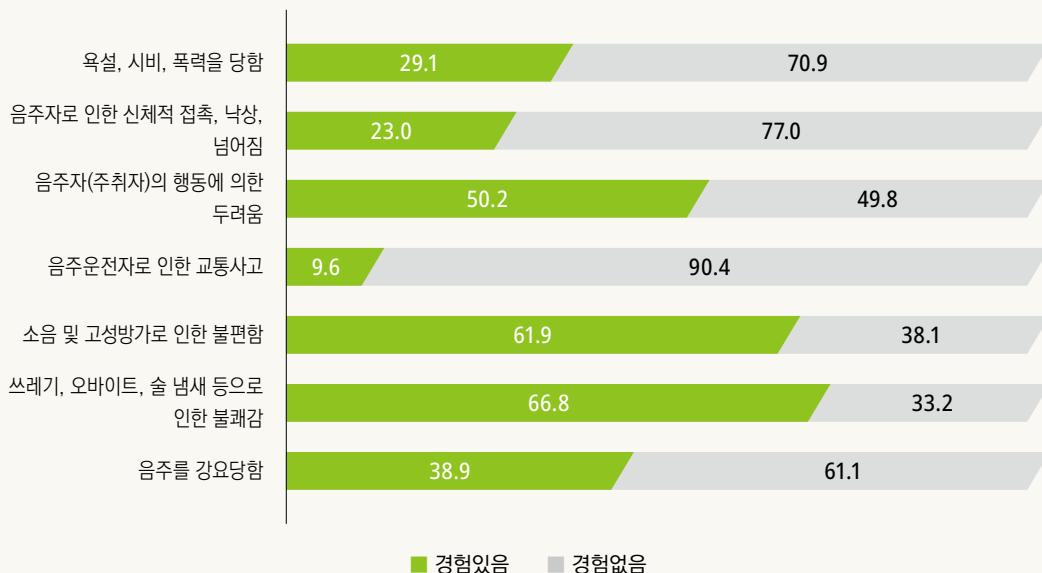
- 대상 및 방법 : 국내 거주 일반인 3,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주요 내용

-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으로는 ‘쓰레기, 오바이트, 술 냄새 등으로 인한 불쾌감’이 6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소음 및 고성방가로 인한 불편함’(61.9%), ‘음주자(주취자)의 행동에 의한 두려움’(50.2%)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남

[그림 3] 주취자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오바이트, 소란, 고성방가, 폭력, 성희롱 등) 경험

(단위:%)



- 음주폐해예방 정책에 대한 동의도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가 4.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시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범죄 형량을 감경해주어서는 안 된다’(4.41점), ‘음주폐해예방(건강위험,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을 위한 대국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4.14점),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캐릭터 주류광고를 제한해야 한다’(4.0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음주폐해예방정책·홍보 대국민 인식조사(202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림 4] 음주폐해예방정책 동의도(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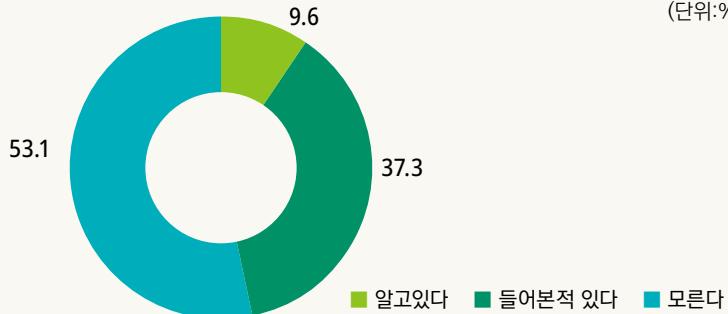
(단위:%)



- 공공장소 금주구역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9.6%로 나타났으며,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37.3%, 모르고 있는 응답자는 53.1%로 나타남

[그림 5] 공공장소 금주구역 인지도

(단위:%)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금주구역을 운영하였으나 상위법 부재로 금주구역 운영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2.29. 개정, '21.6.30. 시행)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2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금주구역 지정)

-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3

주요 내용

● 주구역 지정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주구역
- 금주구역 지정 및 보고
- 금주구역 표지 및 설치·점검·관리 등

● 금주구역 지도·점검

- 금주구역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
- 금주구역 음주자 지도·단속
- 금주구역 홍보 및 교육 등

4

금주구역 지정·운영 추진방향

	2022~2023년	2024~2026년	2027년~
목표	표준조례안 제정 및 계도 홍보	전국 지자체 금주구역 운영 활성화 지원	전국 지자체 금주구역 운영 확대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주구역 관련 표준조례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 • 금주구역 홍보 • 지자체 금주구역 사업 활성화 컨설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금주구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컨설팅 운영 • 금주구역 홍보(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금주구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컨설팅 운영 • 금주구역 홍보(계속)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조례 제정 • 금주구역 홍보 •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조례 제·개정 • 금주구역 지정·설치 • 금주구역 계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조례 제·개정 • 금주구역 확대 • 금주구역 계도·단속

※ 지자체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제정, 금주구역 홍보 활동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의 추진주체로 추진시기, 운영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1

금주구역 지정

2

금주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2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1

금주구역 지정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금주구역 지정)

-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금주구역 지정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관할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안내표지 설치 등)할 수 있음
* 표준조례안 참조(44~45p)
- 공공장소 음주폐해 등 음주조장환경 현황, 주민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 필요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함
- 이때, 지역주민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전문가(위원회) 자문,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음

3) 금주구역

금주구역 지정 우선순위 설정 기준 (안)

하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내 운영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변경 가능함

- ① 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 ②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시설/기관
- ③ 어린이 공원, 도시 공원, 국립/도립 공원, 하천 등 지역 주민이 많이 활동하는 개방된 공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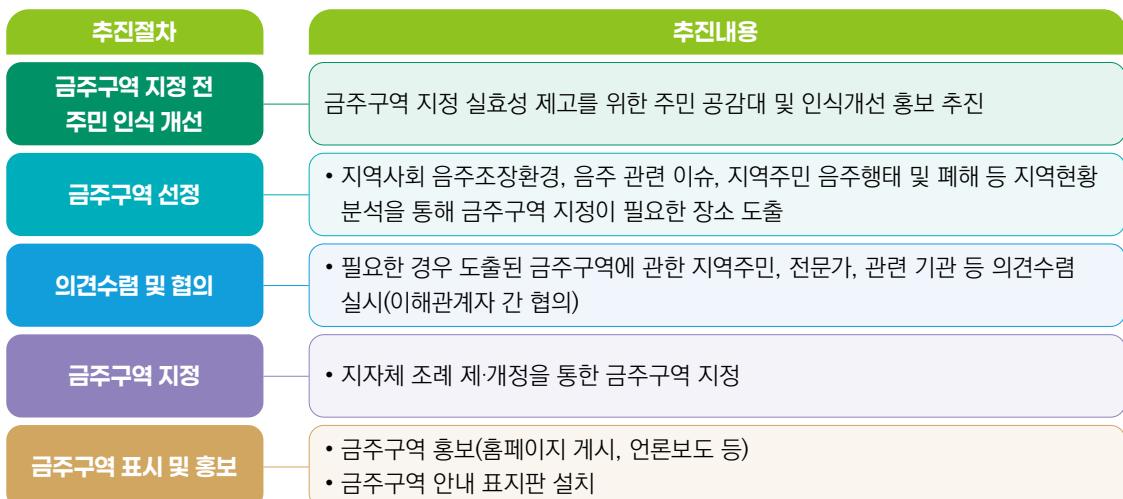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법원조직법 제3조)
- 지방공기업의 청사(지방공기업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청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청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
- 학교의 교사와 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의료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청소년수련관, 청소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
- 학원과 교습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하천·강 구역 및 시설(하천법 제2조)
-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시된 금주구역은 권장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4) 금주구역 홍보

- 지정된 금주구역은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홍보하여야 함

[그림 6] 금주구역 지정 추진절차



2

금주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1)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 4

2) 금주구역 표지판 설치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 (금주구역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설 소유자·점유자는 금주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3)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방법 및 내용

① 법적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안내표지 설치 방법

-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의 형태로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금주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 및 시설의 관리자가 이를 부착할 수 있음
- 금주구역 인지 용이성을 위해 가급적 통일된 양식을 권장함

* 절주온(ON) 홈페이지(<https://www.khealth.or.kr/alcoholstop>) → 자료 → 발간물 → '금주구역 표지 활용 가이드라인' 다운

③ 안내표지 크기

- 지정된 금주구역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안내표지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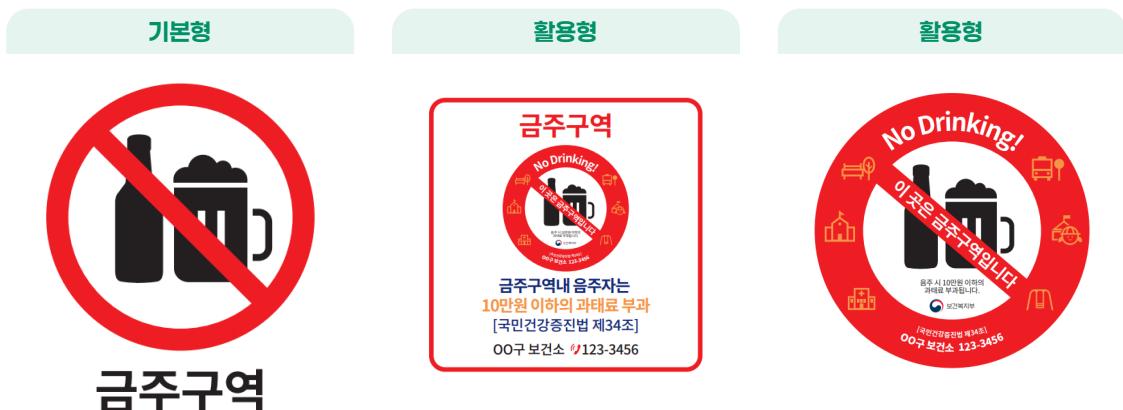
④ 안내표지 내용

-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등) 및 필요한 경우 신고 가능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금주구역 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음

⑤ 기타

- 안내표지는 날씨, 계절 등 환경변화와 폭우, 태풍, 우박 등으로 인한 파손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도록 함
- 파손된 안내표지는 발견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표지를 파손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음

[그림 7] 지자체 금주구역 표시 예시



1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수행체계

2

금주구역 기본 관리 업무

3

금주구역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4

금주구역 지도·점검

5

금주구역 안내표지 등 점검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3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PART 3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1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수행체계

[그림 8]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추진체계도



2

금주구역 기본 관리 업무

- 地方自治團體의 장(기초·광역)은 관내 금주구역 지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및 구역·시설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금주구역 관리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地方自治團體의 장은 금주구역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금주구역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1) 시·도(광역자치단체)**

- 시·도지사는 지도·단속 일정을 수립하기 전에 관내 금주구역에 대한 지도·단속 중점방향 및 점검 목표 등을 설정하여 해당 시·군·구에 알리도록 함

〈중점방향 및 점검목표 예시〉

구분	중점 방향 및 점검 목표 예시
중점 방향	① (단속) 정기·수시 점검, 휴가철 공공장소 음주 집중 점검 등 ② (점검) 금주구역 표지 점검 등 ③ (계도·홍보) 음주자 계도 및 홍보 등
점검 목표	관할지역 금주구역 전수 조사, 금주구역 중 시민공원 전수 점검 등

- 금주구역 지정·관리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지도·단속 방향을 제시함
- 점검 계획에는 시·군·구의 합동 점검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2) 시·군·구(기초자치단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지도·단속 방침에 따라 관내 금주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계획수립 시 금주구역 현황 분석을 통해 동원인력 및 운영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금주구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 시 단속계획을 지역사회에 사전 고지할 수 있음

- 합동단속은 아동·청소년 부서, 경찰청 등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금주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캠페인 계획도 포함하여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금주환경 조성 특화 전략도 포함할 것을 권장함

3) 지도·점검 계획 보고

- 각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도점검 계획을 취합하여 합동(일제)단속을 포함한 최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지도·점검 결과보고

- 시·군·구는 금주구역 지도·점검 실적을 시도에 결과보고하여야 하며 시·도는 취합 관리하여야 함

4

금주구역 지도·점검

1) 금주구역 지도·점검 기본 방향

- (지도·점검 목적) ① 음주 및 주취로 인한 직·간접폐해를 예방하고, ②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상황 노출 차단을 통한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저감화 및 금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함
 -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자원 등을 연계하여 금주구역의 자율적 확산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지역사회 활성화) 학계,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대학생 서포터즈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단*(가칭)'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 지역 내 홍보, 캠페인, 지도·단속 지원, 여론조성 등 수행
-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 금주구역 시설 관리자, 주류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폐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절주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음

절주전문인력이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절주전문인력(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로,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교육 및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강사)으로 자격을 갖춘 자

2) 금주구역 지도·점검 운영

① 금주구역 음주행위 단속 사전 준비

- 단속 대상 :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

* 음주행위 :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단,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이 담겨 있더라도 음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명백하다면 단속의 대상이 됨

** 세부내용 FAQ(66~67p) 참조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금주구역 지정)

-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속 주체 :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금주구역 제도는 음주 및 주취로 인한 범죄(소란, 위협, 폭력 등) 예방에 앞서 금주·절주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주류 노출 제한 등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통한 음주폐해예방을 목적으로 수립된 제도이므로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를 단속의 주체로 함

- (협조) 관할 경찰청* 등

* 금주구역 음주단속은 자치단체와 경찰의 협조체계 하에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청 등과 부서 간 업무 협의 및 사전에 운영 계획 등을 경찰청에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참여) 지역의 시민단체, 자원봉사, 대학생 서포터즈 등

구분	역할	활동내용
지도·점검·단속	(주체)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협조) 경찰	금주구역 단속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계도·홍보	(주체)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협조) 지역 시민단체, 자원봉사,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등	금주구역 음주금지 안내 및 홍보 등

- 단속 시 준비물 : 카메라(위반행위 사진 촬영), PDA장비(인적사항 확인), 음주측정기*(알코올 농도 측정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위반확인서***(PDA장비 미사용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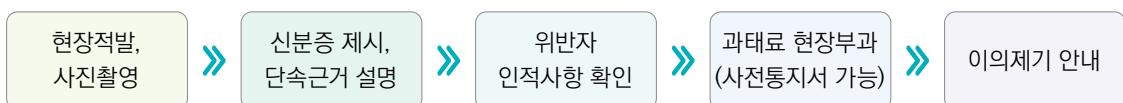
* 위반자가 음주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조수단으로 사용 가능함

** 단속 시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지함(양식 예시(65p)참고)

***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지 못하였을 시, 차후 '위반확인서'를 발급함(양식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동일함)

② 단속 원칙^{3) 4)}

[그림 9] 금주구역 내 음주 단속 절차(안)



❬ 단속 인력은 금주구역 음주행위 단속 시 아래의 원칙을 준수하여 원활히 업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금주구역 단속인력의 단속규정 숙지(위반사항 법규적용) 사유

- 위반자와 마찰 시 단속근거 등을 명쾌히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대화가 짧게 되고, 항의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음

- 단속규정 적용은 일관성 있고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야 마찰을 줄일 수 있음

① 금주구역 점검 계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여 알리도록 함

② 단속활동 시에는 정당한 공무집행 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반드시 최소 2인 1조*로 함께 행동하도록 함

* 지자체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있는 경우 협력 가능(단, 음주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함)

3) 「직원·구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2015). 금천구 주차관리과

4)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2021).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③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상대방(위반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인권존중의 세련된 단속관행을 정착시킴
- ④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함
- ⑤ 음주단속 사전에 단속 계획을 관할 경찰서와 공유하고 필요 시 협조를 받아야 함. 특히 폭행·협박 등의 단속 방해 시 신속히 경찰의 지원을 요청(112신고)하여 가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함
- * (예시) 경찰 도움이 필요한 경우 : ①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 ② 대상자가 강력하게 거부하거나 폭력적인 경우 등

3) 금주구역 음주행위 적발자 조치

① 적발자 조치

- (경고 또는 계도) 해당 장소가 금주구역임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폐해예방 관련 정보 또는 교육 제공
 - ①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임을 안내하여야 함
 - ② 위반자가 평소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③ 위반자에게 음주폐해예방 정보 제공(리플릿 등), 보건소 내외 절주 관련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공공장소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10만원 이하)를 처분함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② 공익신고 처리(민원 처리)⁵⁾

※ 공익신고 처리는 현장단속과 같은 기준으로 처분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접수) 일반 민원인이 금주구역에서 음주하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여 공익신고*한 경우 민원을 접수함

* 공익신고로 촬영된 피신고자는 인상착의가 명확하여 신원파악이 가능한 경우만 단속할 수 있음

- (확인조사) 접수된 민원의 위반사실 확인조사*를 위해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상 위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신고된 자료로 위반을 입증할 수 없으면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아니함

* 사실확인요청서는 양식 예시(63~64p) 참조

- (민원처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위반사실 확인* 후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함

* 위반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당사자(위반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 (결과통보) 민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후 종결 처리함

5) 2020 교통단속 처리지침. 경찰청 교통안전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5

금주구역 안내표지 등 점검

1) 안내표지 점검

- 주기적으로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훼손·파손된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함
- 금주구역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안내표지를 추가로 설치·부착할 수 있음

2) 금주구역 내 음주 관련 광고물 제한

- 금주구역에서 음주관련 광고물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가능한 설치·부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함
- 음주관련 광고물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제거 이유를 사전에 게시 또는 안내한 후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함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도·점검계획 예시

(예시 1) 공공장소 금주구역 표시 점검

추진 목적(종점 방향)	금주구역 표시 점검	
추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하반기 1회 및 필요시 예) 합동점검 전 상반기(3월), 하반기(7월),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후(9월)	
점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할지역 금주구역 전수 조사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도시·군·구 보건소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주구역 표지 점검 및 시정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점검표, 금주구역 스티커, 표지 등카메라(위반행위 사진 촬영)	
점검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점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주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금주구역 표시 게시의 적절성 여부* 부착 장소, 크기, 훼손여부 등	
인력운영	점검인력(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도 담당자시·군·구 담당자
	협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원봉사자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후조치) 훼손된 금주구역 표지 재설치 또는 부착	

(예시 2) 공공장소 음주 정기 합동 점검

추진 목적(종점 방향)		공공장소 음주 관련 정기 합동 점검
추진 일정	• 상·하반기(4월, 11월)	
점검 목표	• 금주구역 중 시민공원 전수 점검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 시·군·구 보건소 • (협조) 관할 지역 경찰 	
활동 내용	• 금주구역 단속 및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주구역 안내, 음주폐해예방 정보 리플릿 • 공무원증(또는 단속반 띠) • 사진기(위반행위 사진 촬영), PDA장비(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부과 사진 통지서, 위반확인서(PDA장비 미사용시) 등 	
점검 장소	• 자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점검 항목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인력운영	단속인력(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 관할 경찰 등
	협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단
비고		

(예시 3) 공공장소 음주 특별 점검

추진 목적(종점 방향)	공공장소 음주 특별 점검
추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 1주~3주 예) 공공장소 음주 증가 예상되는 행사 및 휴가철 등 상반기(5월, 지자체 행사 등), 하반기(8월, 여름 휴가)
점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구역 중 시민공원 전수 점검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시·군·구 보건소 (협조) 관할 지역 경찰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구역 단속 및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구역 안내, 음주폐해예방 정보 리플릿 공무원증(또는 단속반 띠) 카메라(위반행위 사진 촬영), PDA장비(인적사항 확인), 과태료 부과 사진 통지서, 위반확인서(PDA장비 미사용시) 등
점검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구역 지정 공원 5개 : OO공원, OO공원, OO공원, OO공원, OO공원 <p>※ 휴가철, 행사 등으로 음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금주구역 일부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p>
점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인력운영	단속인력(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관할 경찰 등
	협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단
비고	

(예시 4) 계도 및 홍보

추진 목적(종점 방향)	계도 및 홍보 등	
추진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1회 및 필요시 예) 매 분기말이나 집중점검 전·후, 금주구역 신규 지정시 등 	
점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구역 중 시민공원 전수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시·군·구 보건소 (협조) 지역 시민단체, 자원 봉사 등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구역 음주금지 안내 및 홍보·캠페인 등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장소 금주 홍보 팻말 공공장소 금주 안내 리플릿 등 	
홍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또는 신규지정 시 지자체 행사 등 관내 민관에서 행사시 등 	
인력운영	점검인력(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협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주서포터즈 등
비고		

1

교육 및 연계

2

홍보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4

교육 및 홍보



PART 4

교육 및 홍보

1

교육 및 연계

1) 교육 대상 및 내용

- (대상자) 금주구역 지도·점검자*, 주류판매자, 지역주민 등

* 금주구역 지도원(공무원), 시민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 절주서포터즈 등

- (주요 내용) 음주폐해예방 관련 제도 안내, 음주 관련 건강문제, 직·간접 폐해 및 예방법 등

※ 절주전문인력 활용 교육 가능

2) 연계

- 음주 단속 중 문제음주자 발굴 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를 통해 필요시 지역 내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음

*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안내서 참조)

[그림 10]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과정



2

홍보

1) 홍보대상 및 내용

- (대상자) 지역사회 주민, 금주구역 시설 관리자 등
- (주요 내용) 자자체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주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사항 안내 등

2) 방법

- 지자체 매체(홈페이지, SNS, 지역방송 및 신문 등)를 활용함
 - 지역행사 시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함
 - 관할 지역 내 학교, 직장 등을 대상으로 금주구역 지정 및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 대학교 절주서포터즈, 중독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각종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 ※ 절주서포터즈 협력홍보, 금주구역 홍보콘텐츠 활용(절주온(<https://www.khealth.or.kr/alcoholstop>) > 자료 > 영상, 발간물 등



참고

공공장소 금주구역 공익광고

참고

공공장소 금주구역 공익광고

1

인력운영 방향

2

금주구역 지정 실적 보고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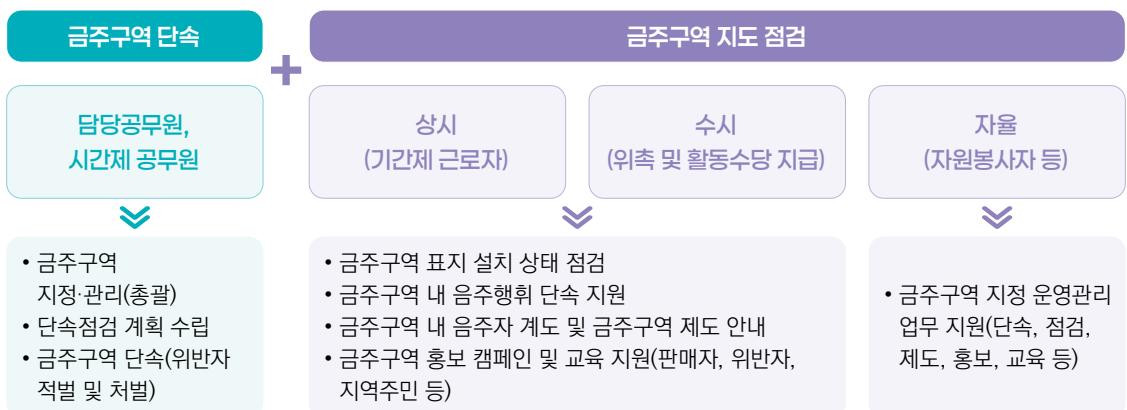
행정사항



1

인력운영 방향

[그림 11] 금주구역 단속인력 운영 방향



1) 인력의 채용·위촉

- 금주구역 지도·관리를 위해 상시 또는 수시인력을 채용·위촉할 수 있음

- (채용)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채용하되, 금주구역 지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권장함

* (자격(예시)) 보건교육사, 보건·질주업무 경력자 및 전공자, 알코올 중독 관련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 (위촉) 인력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활동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인건비 편성 기준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 참조

2) 인력의 운영

- 금주구역 단속(적발 및 과태료 부과)은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되, 상시 또는 수시 인력,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음
- 상시·수시인력 또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금주구역 지정·운영 지원 업무(지도·점검 지원, 안내·계도, 교육·홍보 등)를 수행함
- 사업수행 인력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 참여를 권장함

* 절주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음주폐해예방교육’ 과정 등

2

금주구역 지정 실적 보고

1) 보고 시기 및 방법

- ① 사업기간 : 전년도 1월 ~ 12월
- ② 보고 방법 : 공문 시행
- ③ 보고 시기 : 매년 2월 말

2) 보고 내용 : 음주폐해예방사업 실적 보고 내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현황'

※ 음주폐해예방사업 실적보고 내 금주구역 지정 현황으로 제출

참고.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조례 제·개정 현황

〈 지자체 음주폐해 관련 조례 제정률 〉

(단위 : 개, %)

2023년			2024년			2025년		
총계(제정률)	광역	기초	총계(제정률)	광역	기초	총계(제정률)	광역	기초
138(48)	13	125	149(59.3)	14	135	159(65.4)	14	145

〈 금주구역 조례 제정 현황 〉

(단위 : 개)

2024년			
연번	자치단체	광역	기초
1	서울	○	21
2	부산	○	11
3	대구	○	5
4	인천	○	8
5	광주	○	4
6	대전	-	5
7	울산	-	4
8	세종	○	-
9	경기	-	19
10	강원	-	14
11	충북	-	9
12	충남	-	9
13	전북	-	7
14	전남	○	8
15	경북	○	2
16	경남	-	9
17	제주	○	-
합계		9	135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번	자치단체	광역	기초
1	서울	○	24
2	부산	○	11
3	대구	○	6
4	인천	○	8
5	광주	○	4
6	대전	-	5
7	울산	-	4
8	세종	○	-
9	경기	-	21
10	강원	-	16
11	충북	-	10
12	충남	-	9
13	전북	-	7
14	전남	○	9
15	경북	○	2
16	경남	-	9
17	제주	○	-
합계		9	145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6

지자체 표준
조례안



PART 6

지자체 표준 조례안(예시)

※ 연구 최종안을 근거로 작성

** 본 표준조례안은 예시로 지자체 특성에 맞추어 변경 가능

지자체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지자체장의 책무) 시·도지사는 자치 시군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청사
4.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10.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14.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강 구역 및 시설
 15.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16.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151조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평가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34조 3항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7

지역사회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 우수사례



PART 7

지역사회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 우수사례 ('24~'25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주구역 확대 지정, 공공장소 음주제한 정책 정착화

○ 추진배경

- 단체장 의지 : 「면목역광장 민·관 협의체 출범 평가 보고회」 구청장 요청사항('24.4.17.)-금주구역 지정 범위 외 상습 음주 문제지역까지 확대 지정
- 온·오프라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554명 참여) : 찬성(97.7%), 반대(2.3%)



○ 금주구역 확대 지정

- 금주구역 지정 근거마련(조례) : 2022. 11. 24.
- 금주구역 지정 : 2023. 07. 14.
- 금주구역 지정 확대 : 2024. 1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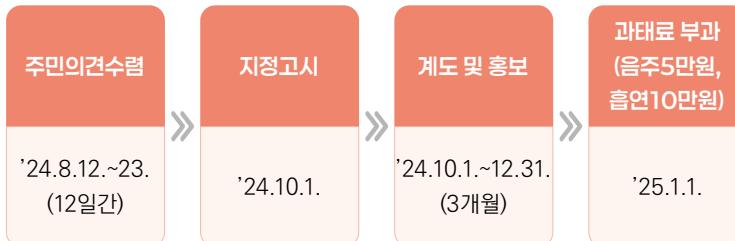
지역주민 의견수렴

구분	지정일	기존 지정범위		확대범위	
		지번	면적(m ²)	지번	면적(m ²)
금주 구역	'23 07.14.	면목동 120-1, 2, 30	2,664.7	면목동 120-1, 2, 30 (광장 주변 보도 포함), 롯데리아 주변 도로	3,311



금주·금연 구역

○ 진행절차



- 중랑경찰서 협업, 특별단속팀 운영
 - 중랑구보건소, 중랑경찰서, 사회복지과
 - 내용 : 금주·금연구연 내 음주·흡연행위 및 주취소란 등 경범죄 합동단속



금주·금연구연 현판

○ 주요실적

- 면목역광장 주·야간단속 : 181회, 과태료 부과 21건(음주 6, 흡연 15)
- 면목역광장 기초질서 유지 중랑구경찰서장 표창



금주·금연구연 현수막



특별단속팀 운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목적 :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으로 음주로 인한 폐해 예방

- **추진배경 :** 어린이공원 내 음주로 인한 피해 호소 민원
- **대상 :** 장독골, 무궁화, 긴고랑 어린이공원(총 3개소)
- **금주구역 지정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 10. 17. 개정)

● 추진일정

- [장독골 어린이공원]

- 행정예고 [2023. 09. 08. ~ 09. 27.]
- 금주구역 지정 고시 [2023. 10. 04.]
- 금주구역 홍보·계도 [2023. 10. 04. ~ 12. 31.]
- 금주구역내 음주행위자 단속 [2024. 01. 01. ~]

- [무궁화, 긴고랑 어린이공원]

- 지역주민 설문조사 [2024. 04. 15. ~ 04. 26.]
- 행정예고 [2024. 04. 29. ~ 05. 19.]
- 금주구역 지정 고시 [2024. 05. 20.]
- 금주구역 홍보·계도 [2024. 05. 20.~ 08. 31.]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단속 [2024. 09. 01. ~]

● 내용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음주행위 :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

- **단속인력 :** 기존 금연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의 계약을 종료하고 금연·금주 단속원으로 신규 채용

- **주요실적 :** 금주구역 3개소 신규 지정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2건 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① 금주구역 조례개정

● 목적 : 금주구역 조성을 통한 음주폐해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내용

- 2024. 4. 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음주청정구역 지정 →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
- 2024. 6. 21. ~ 6. 25. : 금주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구청 전 부서 요구도 조사 실시(음주 관련 민원 다발 시설 등)
 - 문화체육관광과 : 공공체육시설 16개소 금주구역 지정 요구 → 수용

② 금주구역 지정·관리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정대상 : 총 300개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64개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220개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공공체육시설 16개소

● 금주구역 지정시행일 : 2024. 07. 08.

●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4. 07. 08. ~ 2024. 12. 31.

- 과태료 부과일 : 2025. 01. 01. 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추진과정

- 공원 및 체육시설 80개소 안내판 전수조사 실시

• 공원 표지판 16개 금연·금주구역 표시 안내판으로 교체



▣ 이 공원은 금연·금주구역입니다 ▣

- ❶ 이 공원은 간접흡연·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❷ 이 곳에서 흡연·음주행위를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위: 공원 전역]



● 연계·협력

-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관광과 : 금주구역 안내 및 홍보

- 홍보미디어실 : 금주구역 지정 시설 홍보

- 계양경찰서 : 음주자 주취 소란 시 대응 협조

- 기획예산실 :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운영비 지원 협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공원 금주구역 지정(★대구 최초)

- 지정일 : 2023. 08. 01.
- 지정대상 및 범위 : 어린이 놀이시설 포함 도시공원 면적 전체

연번	구분	공원명	위치	면적(m ²)
1	근린공원	함지공원	북구 동암로38길 12	46,910
2		태전공원	북구 칠곡중앙대로 397-20	55,223
3		구암공원	북구 구암로32길 35	25,700
4	어린이공원	운암공원	북구 구암동 655-2	3,214
5		송암공원	북구 관음동로 113	1,651
6		동화공원	북구 동변동 659	1,983
7		대현공원	북구 대현동 112-41	3,778
8	소공원	해바라기공원	북구 오봉로1길 41	1,701



금주구역 안내 표지



금주구역 단속현장

- 계도기간 : 2023. 08. 01. ~ 2024. 01. 31. (6개월)
- 과태료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시 5만원 부과(2024. 02. 01. ~)

금주구역 홍보 및 계도 시행

- 기간 : 2023. 11. ~ 2024. 01.
- 대상 : 금주구역 8개소
- 내용 : 금연지도원과 연계하여 금주구역 홍보 및 음주행위 계도
- 실적 : 297회



과태료 부과 언론보도



신규 금주구역언론보도



신규 금주구역 지정장소

금주구역 추가 지정

- 지정일 : 2024. 09. 01.
- 지정대상 및 범위 : 칠성종합시장 남편 칠성마당 일대(720m²)
- 계도기간 : 2024. 09. 01. ~ 2025. 02. 28. (6개월)
- 과태료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5만원 부과(2025. 03. 01.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상) 달서구민

●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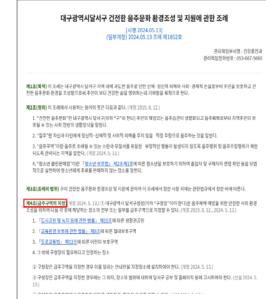
1. 차지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및 금주구역 지정

- 내용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확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5만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공원녹지과와의 협의를 통해 금주구역 지정 공원 목록 추출

- 주요실적

- 금주구역 28개소 지정 : 2024. 07. 01.
- 계도기간 : 2024. 07. 01. ~ 12. 31.
- 금주구역 내 안내판 설치



2.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취약동 내 절주실천수칙 LED 안내판 설치

- 내용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로 지역주민 의견 반영하여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밀집동 내 공원 4개소 선정

- 주요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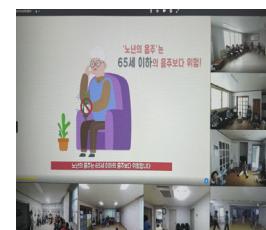
- 태양광 LED 안내판 4개소 4대 설치



3. 타사업 연계를 통한 폭넓은 음주폐해예방사업 실시

- 내용

-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반’연계 주류 판매업소 계도
- 클린판매점 지정사업 범위 확대 :‘편의점 → 일반음식점’
- 통장 연계 관내 아파트 금주구역 안내 포스터 게시
- 「북스타트 책꾸러미 사업」연계 금주구역 안내 포스터 배부
- 스마트경로당 연계 음주폐해교육 및 금주구역 홍보
- 이동식 금연클리닉 연계 사업체 근로자 대상 상담
-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계 초·중·고등학교 대상 음주폐해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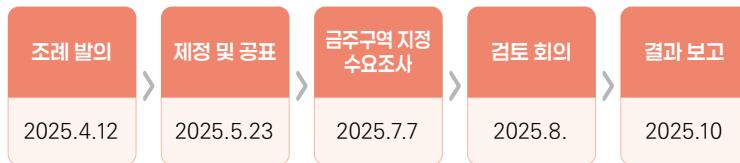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조례 :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일자 : 2025.5.23.(공표일)

내용

- 금주구역 지정 근거 마련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금주단속원 운영 근거 확보(보건복지부 연계)
 - 절주건강기업 인증제 운영 근거 명시
 - 절주 운동 지원 및 절주사업 추진 제도적 근거 마련
 - 금주구역 지정
 - 진행절차



○ 주요실적

-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공표(2025.5.23.) 절주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 금주구역 지정 수요조사(22개 동, 공공기관 5개소) 실시, 주민 의견 수렴 및 현장 점검 병행
 - 총 5곳(개포근린공원 2곳, 대치목련공원, 대치은행나무공원, 강남구립도서관) 지정 요청 완료
 - 금주구역 지정 검토회의(8월) 및 결과보고(10월 중) 통해 지정 절차 단계별 추진 중
 - 금주단속원 운영근거 확보 위한 조문개정 보건복지부 공문 발송

수요조사 실시



구역 지정 검토 회의

조문개정 건의

충청북도 옥천군

방방곡곡 음주폐해예방 환경조성

- **전략** : 산림과 산림보호팀 협조 및 금연·금주 지도원 활용 수시 점검
- **목적** : 지역 내 절주환경 조성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
- **대상**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주구역 104개소
- **내용** :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지도·단속, 금주구역 표지 관리 상태 점검
금주 지도원 수시 점검 및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 옥천군 조례 금주구역 2개소 추가 지정 고시(2025. 7. 16.)

▶ 실적 : 104개소/179회(100%)

구분	실적	목표
금주구역 지정·관리	104개소/179회	104개소
청소년 주류 판매 모니터링	546개소	540개소
주류 판매점 마케팅 모니터링	554개소	540개소
주류 판매자 대상 절주 홍보·교육	547개소	540개소



전국최초 금주구역 지정 옥천군「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1. 6. 17.)

- **전략** : 설치업체 정기 점검 및 금연·금주 지도원 활용 수시 점검
- **목적** : 금주구역 인식 제고 및 지역 내 절주환경 조성에 기여
- **대상** : 금주 안내 시설 47개(건강정보판, LED전광판, 로고라이트 등)
- **내용** : 금주구역 안내 시설물 작동 여부 수시 점검 및 유지·보수 등
- **실적** : 47개(100%) 도내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① 조례 개정과 금주구역 지정 ('25. 5. 26.)

○ 추진근거

- 금주공원 지정 조례 개정 :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24. 10. 26.)
- 금주공원(3개소) 지정여부 찬반 설문조사(575명) ⇒ 97.5%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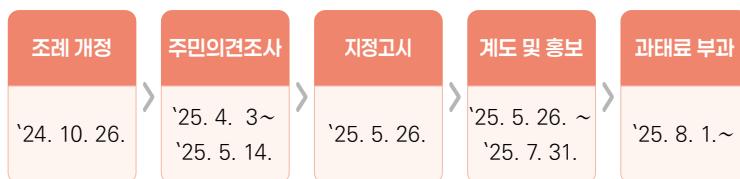


주민 의견수렴

○ 대상 : 은행어린이공원, 금빛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

- 주민조사를 통해 주취자 상존 공원 및 인근공원(풍선효과 방지) 지정

▶ 진행절차



○ 내용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주요실적

- 만족도 조사 결과(151명) : 금주구역 인지 79%, 음주행위 감소 61%
- 금주공원 지정 전·후 동기간('24년/'25년 6~8월) 112 신고건수 : '24년 157건 ⇒ '25년 142건으로 9.5% 감소

※ 자료제공 : 금천경찰서



금주구역 표지판 설치



금주구역 현수막 설치

② 금주공원 음주행위 경찰 합동 단속·홍보

○ 목적 : 주취자 비협조 등 현장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계도 실효성 강화

○ 대상 : 금주공원 3개소 (은행, 금빛, 부장천)

○ 참여기관 : 금천구보건소, 금천경찰서(범죄예방대응과), 백산지구대, 금천파출소,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 방법

- 금천경찰서 및 금주공원 관할 백산지구대, 금천파출소 협력
- 연금 등 지급일 합동 캠페인 (연금 등 지급일 음주행위 증가)



○ 내용

- (보건소, 경찰, 자율방범대)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자 계도
- (보건소, 경찰, 자율방범대) 금주구역 홍보캠페인, 거리 홍보
- (보건소)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 (경찰) 주취자 음주소란 대응

○ 주요실적 : 총 6회 실시 (5.26. / 5.28. / 7.9. / 7.23. / 8.25. / 9.25.)

③ 금주공원 회복을 위한 「정원처방사업」합동 캠페인 운영

● **목적** : 상습음주자 포함 주민 참여형 원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음주습관 전환 유도 및 건강한 공원 문화 확산 도모

● **장소** : 은행어린이공원 (금주공원)

● **방법**

- 공원녹지과 「금천형 정원처방사업」과 연계한 합동 캠페인 운영
- 건강도시 컨설팅(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문 반영

※ 전문가(도시공학·보건학) 자문 : 금주공원 내 주민 참여형 긍정적 활동으로 공간 점유율을 높이고, 조도 등 환경 개선으로 지속 가능성 강화



합동 캠페인 운영

● **내용**

- 보건정책과 : 홍보 배너 설치, 절주 리플릿 등 홍보물품 배부, 상습음주자 대상 알코올 사용장애 자가진단(AUDIT-K) 실시
- 공원녹지과 : 정원처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풀피리 음악회, 식물을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 정원 가꾸기 등)



금주공원 정원 가꾸기

● **실적** ※ '25. 10. 24. 기준

- 정원처방사업 연계 캠페인 17회,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의견 83%
- 상습음주자 대상 알코올 사용장애 자가진단(AUDIT-K) 실시 : 7명



상습음주자 프로그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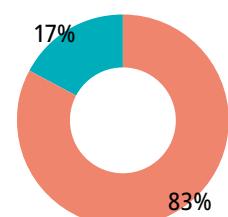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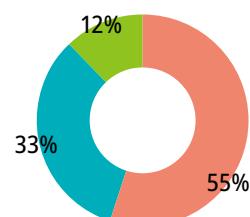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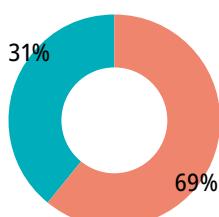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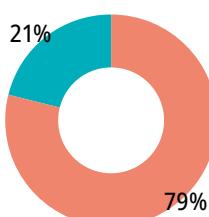
금주구역 지정 만족도조사

① 금주공원 지정여부
(79% 알고 있다)

② 공원에서 음주행위
감소여부
(감소했다 61%)

③ 금주공원 임을 알게 된
경위(중복응답)
(현수막·안내판 55%)

④ 정원처방사업 참여자
만족 여부
(만족 83%)



■ 알고있다 ■ 몰랐다

■ 감소했다 ■ 아니다

■ 안내판 ■ 캠페인 ■ 기타

■ 만족 ■ 불만족

1

금주단속요원 업무 매뉴얼(안)

2

양식(예시)

3

FAQ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8

기타



1

금주단속요원 업무 매뉴얼(안)

1) 근무 태도⁶⁾

● 단정한 용모

- 금주단속요원은 행정 최일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정한 용모 유지가 가장 중요함
- 금주단속요원은 단정한 용모 유지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어야 하며, 근무 중에는 조끼, 명찰 등 공무수행 중임을 알리는 복장 착용을 권장함
- 단속 활동 시 금주단속요원 용모와 첫 인상에 따라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용모에 대해 수시로 점검함

● 공직자다운 태도(언어, 말씨)

- 단속 상대방에게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위반事實을 정중히 설명하여야 함
- 단속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첫 인상을 좋게 하여야 함
-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분은 공직자임을 잊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함

대화 시 첫인상을 좋게 할 수 있는 점검 사항

- ① 이야기 할 때의 표정은 부드러운가?
- ② 겸허한 말씨를 사용하는가?
- ③ 말과 태도는 일치하는가?
- ④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 ⑤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는가?
- ⑥ 태도에 공직자로서의 성실함이 보이는가?

6) 2025 교통단속 처리지침. 경찰청 교통안전과

● 대화 방법(논리정연한 화법)

- 화법은 상황에 따라 논리에 맞고 정확·명료하여야 함
- 상대방의 이야기는 진진하게 끝까지 경청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함
 - ①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
 - ②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중점사항만 이야기 함
 - ③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 함
 - ④ 동정, 이해 등 감정표현은 하지 않음

2) 안전 관리^{7) 8) 9) 10)}

● 안전 원칙

-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주단속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도·단속에 임함
- 금주단속요원은 지도단속 시 반드시 2인 1조로 구성하고 항상 동행해야 하며, 음주측정기기의 사용방법, 단속시 주의사항 및 언행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교양한 후 단속활동에 임함
- 위반자가 과격한 언행이나 시비 등으로 대화가 곤란하면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함

※ 진정요청 예시문 : “선생님, 화가나셨겠지만 차분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며 적정 거리를 유지함
- 폭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에 협조를 받음
- 위반자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저항이 심하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음
- 금주단속요원의 보호를 위해 위반자의 행동이 폭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 등을 실시함. 단, 녹음, 녹화를 시작 전에 사전고지를 함

※ 사전고시 예시문 : “선생님,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두 녹음됩니다. 말씀을 가려서 해주십시오”

● 상황별 대처요령

- 욕설, 희롱에 대하여
 - ① 위반자로부터 욕설, 희롱을 받을 때에는 즉각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경청한 후 단속사항에 대해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② 욕설이 있더라도 욕설로 대응하지 않는 자신조정법이 필요함
 - ③ 폭언 또는 희롱정도가 심해 단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면 우선 PDA 또는 카메라로 사진촬영을 하고 단속을 중단한 채 가까운 경찰서 등에 도움을 청함
- 공갈, 협박(위협)에 대하여
 - ① 공갈, 협박 시에는 위반 사실을 기록한 후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기억하여야 함
 - ② 경찰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함

7) 2025 교통단속 처리지침. 경찰청 교통안전과

8) 「직원·구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2015). 금천구 주차관리과

9)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2018). 대한의사협회

10)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021). 행정안전부

- 폭력에 대하여

- ① 폭력행위가 압박되어지는 상황이거나 폭력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동하여 주위의 경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 지원을 받도록 함
 - ② 다중의 위협 또는 흉기사용 가능 시에도 역시 신속히 이동 후 112에 신고하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조치함
 - ③ 가능한 한 폭력이 발생되기 전에 신속히 이동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
- ※ 폭력 발생 시 동료 단속요원이 신속하게 민원인 제지 또는 경고 멘트 ⇒ “선생님 그런 행동은 형법 제260조에 의한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 유혹(회유)에 대하여

- ① 단속 활동 시에는 위반자로부터 적당히 잘 봐 달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음. 이때에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
- ② 금주단속요원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공무원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함

● 행위유형별 적용법률¹¹⁾

구분	행위유형 및 적용법률
단순폭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위• [법률]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 불안감 조성• [형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모욕에 해당하는 폭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 폭언의 내용이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 [법률] 형법 제311조 : 모욕• [형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모욕죄는 고발(제3자)로는 불가능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폭언의 내용에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 [법률] 형법 제136조 : 공듯비행방해, 행법 제283조 : 협박, 존속협박•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이고,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폭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 [법률] 형법 제260조 : 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뿐이고, 별도의 폭행죄는 미 성립

11)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2021) 행안부

구분	행위유형 및 적용법률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법률] 형법 제260조 : 상해, 존속포행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추가로 상해죄가 성립
기물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 [법률] 형법 제141조 :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형법 제144조 : 특수공무방해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을 손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용물 손괴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업무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떠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법률] 형법 제126조 :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양식(예시)

1) 글주구역 위반 사실확인 요청서(예시)

<p>보내는 사람</p> <p>○○ 구청장</p> <p>주소 (담당 000, ☎)</p> <p>□□□□□</p>	
<p>받는 사람</p> <p>귀하</p> <p>□□□□□</p>	

제 호

금주구역 위반(음주자) 사실확인 요청서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출석일	20 . . . 까지 (전화통화로 출석일시 조정가능)			
담당부서	○○ 구청 ○○○과			
위반 내용	위반일시	20 . . . :		
	위반장소			
	위반사항			

○ 담당자 안내사항 :

- 귀하의 금주구역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니 당시 위반자는 구청 OOO과로 전화하여 위반 내용을 문의하고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가 담긴 동영상 또는 사진은 구청 OOO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을 인정하시면 구청 OOO과에 방문하여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별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종결됩니다.
※ 구청 : 평일 09:00~18:00
- 위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할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팩스·메일 등으로도 제출 가능)
- 지정된 일시까지 출석하기 어렵다면 전화로 담당자에게 출석일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구청장

2)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위반확인서)(예시)

위반 확인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시 △△구 △△동 ○○○

연락처 : 010-0000-****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1. 위반일시 : 20 .○○.○○.
2. 위반장소 : ○○○○(△△시 △△구 △△동 소재)
3. 근거법률 조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 제2항, 제34조 제3항
4. 위반행위(내용) : 금주구역에서의 음주
5. 특이사항(해당 시) : 해당사항 없음

20 년 월 일

위반자(성명) : (서명)

금주구역 단속자 소속 ○○○○과 직급 ○○○급 성명 (인)

○○시 ○○구청장 귀하

Q1. 금주구역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를 소지 하는 것만으로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가?

A1.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술을 마시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술이 들어있고, 뚜껑이 열려있는 주류용기를 들고 있는 상태로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Q2. 텀블러에 술이 담긴 경우 적발이 가능한가?

A2. 술병이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마시는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술병이 아닌 다른 용기(텀블러 등)에 술을 담아 마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단속이 불가능하나, 다른 용기에 술이 담겨있더라도 음주상황이 명백하다면 적발의 대상이 됩니다.

Q3. 금주구역임을 나타내는 안내표지가 훼손되어 금주구역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위반자를 적발할 수 있는가?

A3. 우선 위반자에게 지자체 조례에 의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설명하고 경고 또는 계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주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다시 설치합니다.

음주 상태 사례

① 술과 다른 음료(주스, 무알콜 주류, 물 등)를 섞어 마시거나,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소지한 경우

- 이런 경우 알코올 함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음주상태 확인을 위해 보조수단으로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임

- 오픈된 술병이나 술이 든 용기를 소지한 경우는 음주로 인정함

②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는 경우

-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함. 이에 따라 ‘알코올분 1도 미만’의 음료는 주류가 아님
- 다만 상황에 따라 무알코올 맥주 용기에 술을 담아 마시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③ 외견상 취하지 않아 보임

- 외견상 이상이 없어 보이나 오픈된 술병과 술잔이 있고, 술냄새가 나고 대화를 회피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상황이 명백하다면 적발 대상이나, 본인이 음주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조수단으로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음

④ 음주 소란행위(고성방가, 위협적 행동 등)

- 이는 음주 단속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범죄로 처리함

Q4. 금주구역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데 지자체 표준 조례안과 동일하게 조례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까?

A4. 아닙니다. 본 지침 6장 지자체 표준 조례안 예시로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여 조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Q5. 금주구역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참고할 조례가 있습니까?

A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지자체별 금주구역 관련 조례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금주구역 홍보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A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온에 다양한 홍보 자료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 절주온(ON) 홈페이지(<https://www.khealth.or.kr/alcoholstop>) → 자료 → 발간물, 영상 등

Q7. 금주구역 지정 관련하여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대됩니까?

A7. 금주구역 저정 등 음주폐해예방 관련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Q8.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까?

A8. 금주구역 지정 추진 절차는 크게 ‘지정 전 주민 인식 개선 → 금주구역 선정 → 의견수렴 및 협의 → 금주구역 지정 → 금주구역 표시 및 홍보’로 이루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Part2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1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금주구역 단속 인력 위촉 및 직무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A9.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위촉 운영합니다. 금주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며, 금주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금주지도원증,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합니다.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발간종류	사업 업무편람
관리번호	정책-03-2025-026-11
등록일	2026년 1월
발행일	2026년 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보건복지부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종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8층~10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화번호	02-3781-3500
홈페이지	www.mohw.go.kr https://www.khepi.or.kr/kps https://www.khepi.or.kr/alcoholstop
인쇄처	유파트너보호작업장

2026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KHEPi 한국건강증진개발원